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7
----------	-----

2015. 12. 1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○ 2015. 10. 3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(2015. 11. 4일 회부)

2. 제안이유

- 가. 최악의 전·월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방식 외 민관협력방식의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 필요성이 제기됨
- 나. 공동체주택, 빈집 살리기,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선도적으로 공급 및 확산할 주체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주택 공급 및 확산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
- 나. 사회주택 모델 개발
- 다. 사업 목표설정 및 달성방안 강구
- 라.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, 제도개선, 시민홍보 등 제도적 기반 확대

4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본예산 반영

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”를 설치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-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4조¹⁾에 따라 시장은 “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”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조례 제26조 제1항²⁾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.
- 서울시는 그간 ‘빈집 리모델링’, ‘토지임대부 사회주택’, ‘공동체주택’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직접 시행해왔으나,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. 이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관련민간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”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.
-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,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,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,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지역별 민간 비영리 주거지원단체에

1) 제24조 (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(이하 "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2) 제26조 (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위탁하고 총 10개소의 “주거복지지원센터”를 지정·운영 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,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이러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위탁업무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인사·복무 및 문서관리, 예산·회계, 성과관리 및 위탁협약업무 미이행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「사회주택활성화 기본계획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미수립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중·장기적인 사회주택 공급계획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.
- 종합하면 이번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처리는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보임. 다만 조직관리 방안, 사회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업무를 병행해야 할 것임.

[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]

제6조 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,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
2.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
3.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·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
4.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
5.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